2020. 9. 1.(화) 10:30제2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제 1 차 의 회 운 영 위 원 회

검토보고서

의 **회 운 영 위 원 회** 전 문 위 원 이 동 진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95호

2020. 9. 1.

건 명	논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 의원 외 5명	제안연월일	2020. 8. 25.	
소 관 위 원 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	

보 고 내 용

	제안	이유
--	----	----

○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조정하여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○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15일로 앞당겨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출시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하기 위함.(안 제4조)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동법 제4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호 제96호

2020. 9. 1.

건 명	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 의원 외 5명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 관 위 원 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요구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·진술을 거부 시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별표 1호 서식에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9조)
- 과태료 부과 및 사후조치 절차를 규정(안 제21조)

□ 검토의견

O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동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97호

2020. 9. 1.

건 명	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		
제안 및 제출자	서원 의원 외 5명	제안연월일	2020. 8. 25.
소관위원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연월일	2020. 8. 25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O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출시 상반기 임기만료일 3일전까지 선출하고 투표용지 기재방법 추가(안 제8조)
-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의안의 제출·발의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(안 제9조, 제19조)
-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범위를 규정(안 제9조의2)
- 5분 자유발언 보고기한 명시(안제37조의2)
- 시정질문과 긴급현안 질문관련 사항을 적시함.(안 제73조의2~제73조의3)

□ 검토의견

○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동법 제4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